



보험연구원  
Korea Insurance  
Research Institute

# 보도자료

보도

2017. 10. 25(수) 조간부터

배포

2017. 10. 24(화)

책임자

금융전략실  
조재린 실장(3775-9034)

작성자

이기형 선임연구위원(3775-9014)

홍보담당

변철성 수석역(3775-9115)

총 4매

## 보험연구원, 『생산물배상책임보험 역할 제고 방안』 보고서 발간

### PL법 도입 이후 PL보험 운영 현황과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PL보험 역할 제고방안 제시

- 보험연구원(원장 한기정) 이기형 선임연구위원, 이규성 연구원은 『생산물배상책임보험 역할 제고 방안』 보고서에서 2018년에 개정 제조물책임법(이하 'PL법') 시행 등에 대비하여 생산물배상책임보험(이하 'PL보험') 역할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음

\* PL보험은 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가 사망 또는 다치거나,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때 제조자 등의 손해배상책임 손해와 법률비용을 보상하는 보험

- PL법과 PL보험에 대한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와 PL법 도입 이후 15년간 운영된 PL보험의 리스크폴링 기능, 손해보전기능, 리스크관리 촉진 기능을 분석한 결과, 소비자의 인식제고와 각 기능별 역할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
-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, 제품 소비자는 PL법에 대한 인식과 PL보험의 이해도가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음

□ 보험연구원은 25일(수) “생산물배상책임보험 역할 제고 방안” 보고서를 발간함

- PL보험료는 2002년 PL법 시행 이후 매년 8.5% 증가하여 2015년 현재 1,132억 원으로 배상책임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음
- 그러나 옥시사건 등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낮은 보상한도액으로 PL보험에 가입한 결과 보험금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보전에 역할을 하지 못하는 등 PL보험 역할이 미약한 것으로 보임
- 본 연구는 2018년에 개정 PL법 시행에 대비하여 PL법 도입 이후 PL보험시장 분석,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향후 PL보험 역할 제고방안을 제시함

## PL보험의 운영 현황

- PL보험료는 PL법 시행 전 200억 원 규모에서 매년 8.5%씩 증가하여 2015년 현재 1,132억 원 규모로 성장하였으며, 배상책임보험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음
  - PL보험시장은 PL법 시행 전 대형사 중심 이였으나, 최근 들어 중소형사와 외국사도 시장에 참여하여 경쟁적인 환경으로 전환되었음(2002년 상위 1사 점유비 51.3% → 2015년 29.0%)
  - 손해율(보험금/보험료)은 도입 초기에는 높았으나 최근 들어 기업들의 리스크관리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50%대 이하로 안정화되었음. 그러나 금속제품 및 기계장비 제품 제조업은 92.2%의 높은 손해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언더라이팅 제고가 필요함
  - PL보험은 가입건수 증가로 건당 보험료는 낮아지고 사고건당 지급보험금은 커진 리스크폴링 효과가 존재하는 반면에 PL보험금으로 손해배상액을 100% 보전해주고 있지 못해 손해보전기능은 미약한 것으로 평가됨
  - 또한 현행 보험요율 적용체계는 기업의 리스크관리 정도에 따라 차등적용을 하지 않는 등급요율이기 때문에 PL보험의 리스크관리 촉진기능은 미약한 것으로 평가됨

## PL법과 PL보험에 대한 소비자 인식

- 일반 국민 1,208명을 대상으로 PL법과 PL보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, PL법과 PL보험에 대한 인식이 낮고, 제조자의 안전한 제품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PL보험의 의무화, 징벌적손해배상금제도 도입에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음
  - 응답자 1,208명 중 67.3%의 소비자는 2002년에 시행된 PL법을 알지 못하고 있으며, 알고 있는 소비자(32.7% 395명)도 27.7%(109명)만 세부적인 내용까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, 소비자의 PL법 내용에 대한 인식이 낮음
  - PL법 시행 이후 최근 5년 동안 소비자나 가족의 신체상 피해나 재산상의

피해를 13.4% 소비자(162명)가 경험하였고, 이 중 9.6%인 16명 소비자만 손해배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

- 응답자의 89.5%(1,081명) 소비자가 PL보험 가입의 의무화에 찬성하는 의견을 제시했으며, 88.3% 소비자는 의무화하는 경우 소비자 피해구제와 제조물의 안전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음
- 또한 PL법을 인지하고 있는 소비자(395명)를 대상으로 징벌적손해배상금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질문한 결과 85.4%의 소비자(337명)는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, 징벌적손해배상금을 도입하는 경우 제조자의 제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고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음
- 61.4%의 소비자(746명)는 제품을 구매할 때에 PL보험에 가입한 제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38.6%의 소비자는 이에 무관한 것으로 응답했음. 아울러 82%의 소비자(991명)는 PL보험에 가입한 제품의 가격이 10% 이상 올라가도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

### **PL보험의 역할 제고 방안**

- 기업들이 낮은 보험료를 내고 PL사고 시에 적절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리스크폴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상품개발, 가입률 제고, 다양한 판매채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
- 현재는 2002년에 개발된 PL보험상품이 판매되고 있지만 최근 PL사고과 연관된 사고(리콜비용담보, 제품자체손해담보, 제품결함에 따른 간접손해담보)를 보상할 수 있는 다양한 특약 개발이 필요함
- 보험약관도 국문약관과 영문약관을 이원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, 약관을 점진적으로 일원화하여 보험회사의 효율산출과 적용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, 기업이 보험을 통해 PL리스크를 포함한 배상책임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초과 또는 포괄배상책임보험(excess or umbrella liability insurance)을 공급할 필요가 있음
- 대부분 제품이 여러 제조자가 관여하여 생산되기 때문에 참여자 간 책임부

담관계와 부담방안이 명확해지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나 표준약관에 PL보험가입조항을 신설하여 PL사고를 대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

\* 2017년 6월 현재 41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중 9개 업종만 PL책임부담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1개 업종만(조선제조임가공업)만 PL보험가입을 요구하고 있음

□ PL보험의 손해보전기능을 충분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 시 해당기업의 리스크서비스를 실시하여 충분한 보상한도로 보험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

○ 이 경우 기업의 보험료 부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,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에 PL보험 가입을 선호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험에 가입할 경우 안전하고 사고 시 피해보상도 가능하다는 점을 광고 또는 홍보하여 제품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

○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도입한 개정 PL법이 2018년에 시행될 것에 대비하여 보험회사는 특약을 개발하여 리스크관리가 우량한 기업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담보화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

□ PL보험제도가 기업의 PL리스크관리를 촉진하도록 손해보험회사는 다양한 요율산출체계를 마련하고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 확보가 필요함

○ 현행 보험요율산출체계인 등급요율체계에 손해율이나 리스크관리 상황의 양호 여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하는 성과요율제도를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

○ 보험회사는 PL리스크관리에 필요한 업종별 매뉴얼 등을 개발하고 언더라이팅 전문가를 육성하여 PL리스크컨설팅에 기반한 보험공급이 필요함

□ 보험업계는 PL보험에 가입한 제품에 보험회사명, 가입한 보험상품명칭과 내용, 보험금 청구방법 등을 명시하여 자사를 홍보하는 전략을 검토하고, 자사의 계약자 등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보험교육에 PL보험을 추가해 실시하여 PL법과 PL보험의 인식확산에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

<별첨> 『생산물배상책임보험 역할 제고방안』 보고서 1부. 끝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http://www.kiri.or.kr>